

#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경영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191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2월 05일  
발 의 자 : 김경영, 권수정, 김소양,  
김제리, 김화숙, 박기재,  
이병도, 이영실, 이정인,  
홍성룡 의원(10명)

## 1. 제안이유

- 코로나 19등과 같이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의 경우 대면회의 등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, 시민건강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비대면 회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의 경우, 위원회 회의를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2조의2 신설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첨부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원격회의) 위원회는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원격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&lt;신 설&gt;</u>	<u>제12조의2(원격회의) 위원회는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원격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.</u>